축산물이력법 일부개정 안내

1 무엇이 달라지나요?

2027. 1. 8. 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'거짓표시'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.

현행 '과태료'



500만 원 이하 과태료

개정 '형사처벌'



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

이력번호 '미표시'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(500만 원 이하)가 부과됩니다.

2 적용대상 영업자는 누구인가요?

유통·판매



- 도축업자, 식육포장처리업자, 축산물판매업자, 수입판매업자,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

급식·음식점·통신판매



- 영업장 면적 700㎡이상 음식점, 학교급식법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, 집단급식소
-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축산물 통신판매업자(온라인 쇼핑몰 등)

3 영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

이력번호 확인·동일 번호 표시



- 축산물 포장처리·판매 시 원래 표시되어 있던 이력번호를 확인해 동일하게 표시해야 합니다.

급식·음식점·온라인 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·게시



- 조리·판매하려는 경우 메뉴·게시판 또는 영업장 홈페이지 등에 7일 이내 표시·게시해야 합니다.
- 판매 시 '이력번호 표시 제품' 임을 고지하고 배송 상품에도 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.

정확한 이력번호 표시와 철저한 기록관리로 투명한 축산물 유통에 함께해 주세요!

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

축산물이력법 일부개정 안내

1 무엇이 달라지나요?

2027. 1. 8. 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'거짓표시'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.

현행 '과태료'



500만 원 이하 과태료

개정 '형사처벌'



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

이력번호 '미표시'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(500만 원 이하)가 부과됩니다.

2 적용대상 영업자는 누구인가요?



유통·판매

도축업자, 식육포장처리업자,
축산물판매업자, 수입판매업자,
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



급식·음식점

영업장 면적 700㎡이상
일반·휴게음식점, 학교급식법에 따른
집단 급식소 설치·운영자 및
계약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



통신판매

전자상거래법에 따른
축산물 통신판매업자
(온라인 쇼핑몰 등)

3 영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

이력번호 확인·동일 번호 표시



축산물 포장처리·판매 시
원래 표시되어 있던 이력번호를 확인해
동일하게 표시해야 합니다.

급식·음식점 이력번호 표시·게시



조리·판매하려는 경우 **메뉴·게시판 또는 영업장 홈페이지** 등에
7일이내 표시·게시해야 합니다

온라인 판매 시 고지·표시



판매 시 '이력번호 표시 제품'임을
고지하고 배송 상품에도
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.

정확한 이력번호 표시와 철저한 기록관리로 투명한 축산물 유통에 함께해 주세요!

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